

2024 국정감사 자료집 1

간호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향후 과제

2024.10



더불어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 부천시(갑)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본 정책자료집은 서영석 의원실에서 김원일 법학박사(호서대)에 의
뢰하여 작성된 보고서임을 알립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2장 본론

제1절 제21대 국회 간호법안의 입법과정과 쟁점	7
1. 정치가 약속한 간호법 제정	7
(1) 제21대 국회 정당별 정책 협약 : 간호법 제정	7
(2) 제21대 국회 정당별 간호법 발의	7
(3)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 간호법 제정	9
2. 제21대 국회 간호법안의 입법과정	11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11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등	11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제·자구심사와 본회의 부의 요구 등	13
3.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 간호법 대안	15
(1)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변화	15
(2)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 간호법 중재안	16
(3)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입	17
(4)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18
(5)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부당한 이유	19
4. 간호(사)법안의 재추진	23
(1)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23
(2) 재추진 간호법 : 더불어민주당	24
(3) 재추진 간호사법 : 국민의힘	28
(4) 재추진 간호법<최연숙의원안>	32
(5) 재추진 간호(사)법에 관한 평가	34
제2절 제22대 국회 간호법 제정과 의의	37
1. 간호관련 법률안의 개요	37
(1) 간호법<강선우의원안>	37

(2)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추경호의원안>	38
(3) 간호법<이수진의원안>	39
(4) 간호법<김선민의원안>	40
2.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주요 쟁점	41
(1) 법률의 제명	41
(2) 목적 조항	45
(3) 정의 조항	47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50
(5)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	53
(6) 간호사 업무와 진료지원업무 조항	57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서비스등) 제공 등	63
3. 제22대 간호법 제정과정	67
(1) 배경	67
(2) 2차례 간호관련 법률안 심사, 그러나 계류	70
(3) 간호법 제정에서 공포까지	74
4. 간호법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해석	76
(1) 간호법에 대한 인식	76
(2)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체계	78

제3장 결론

제1절 간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87
1. 간호법 제정 의의	87
2. 간호법의 한계	90
제2절 간호법의 향후 과제	92
1. 간호법 관련한 현재적 문제	92
2. 간호법 개선 과제	94
참고문헌	96

〈표 차례〉

〈표 1〉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주요 내용 비교	8
〈표 2〉 간호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	16
〈표 3〉 2022년 간호조무사 최종 학력별 합격 현황	20
〈표 4〉 재추진 간호법안 주요 내용 비교	25
〈표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표 6〉 간호사법 주요 내용 비교	30
〈표 7〉 간호법(고영인의원과 강선우의원안) 비교	37
〈표 8〉 국민의힘 간호관련 법률 비교(유의동의원안과 추경호의원안)	38
〈표 9〉 간호사 업무(진료관련 제외) 「의료법」과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 비교	57
〈표 10〉 현행 「의료법」과 <강선우의원안, 이수진의원안, 김선민의원>의 진료관련 간호사와 간호사 업무 비교	58
〈표 11〉 현행 「의료법」과 추경호의원의 진료지원 간호사와 간호사업무 비교	59
〈표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66
〈표 13〉 2024년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현황	69

〈그림 차례〉

〈그림 1〉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공약(간호부문)	9
〈그림 2〉 윤석열 공약위키	10
〈그림 3〉 법령의 위계	4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3년 4월 27일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었으나 같은 해 5월 16일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그러나 불과 16개월이 지난 2024년 8월 28일 제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었고 같은 해 9월 20일 간호법이 공포
- 대통령 윤석열은 절반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22건의 거부권을 행사¹⁾하였는데, 그 중 재추진되어 공포된 법률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간호법」이 유일
 - 특히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수정하지 않고도 공포된 유일한 법안이 「간호법」.
- 간호법은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윤석열 후보)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후보)의 공동 공약
 - 제21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과정 끝에 간호법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본연의 목적보다 직능 간 갈등 해소와 정치적 합의를 우선했다는 비판에 직면
 - 그럼에도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이 위키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도했던 정부와 여당이 돌연 간호법 제정에 뛰어든 것은 간호법 제정이 갖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

1) 전진영,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80호, (2023). “현행 제6공화국 헌정체계(1988년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차례 행사, 대통령 노태우 7건, 대통령 노무현 6건, 대통령 이명박 1건, 대통령 박근혜 2건”

아니라 의정갈등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체계와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의사의 위임과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사의 업무로 규정하였고, 업무범위에 검사, 진단, 투약 등을 포괄하여 보건의료직능의 면허 업무체계의 근간을 훼손
- 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학력차별 해소 방안으로 학력 차별을 조장하는 대학 등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

○ 다행히 제22대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간호법은 그 위험천만한 체계와 내용은 삭제되었고, 공공간호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간호법이 갖는 본연의 목적인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와 내용은 담아내지 못함.

○ 「간호법」 제정 목적은

- 첫 번째,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치료적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체계에 갇힌 ‘간호에 관한 사항’을 보건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장하는 것
- 두 번째,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서 일련의 간호과정을 통해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과 같이 공적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²⁾

○ 그러나 언론이나 간호법 관련 유관단체들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평가나 언급에서 「간호법」 제정 목적은 소외되고 있음. 대다수 언론은 「간호법」 제정이 ‘진료공백을 메꾸는 수단’³⁾으로 보도, 그리고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일부 집단은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왜곡된 주장⁴⁾하기도 함.

2) 김원일, “보건의법제 개선방안 연구, 간호법안과 보건의료인력 재편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법학박사논문, (2023), 77~80면 발췌.

3) 동아일보, “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합법화 된다…간호법 국회 통과”, 2024.08.28.

4) 한겨레21, “현장 간호사들, 간호법 통과에 시큰둥한 이유”, 2024.08.28. “2023년 제21대 국회가 담았던 ‘지역사회’와 간호사들이 요구해 왔던 ‘배치기준’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 내용이 빠져 정작 답아야 할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이에 본 연구는 「간호법」 제정 과정에 나타난 쟁점과 갈등,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간호법」의 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
- 본 연구의 주제인 제22대 국회에서 제정된 「간호법」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간호법」 제정 이후 개선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간호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의 간호법안 입법과정과 쟁점,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및 그에 관한 주요 내용과 체계를 분석하고자 함.
- 제21대 국회 간호법안의 입법과정과 쟁점에서는
 - 제21대 국회에서 추진한 간호법은 입법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간호법 제정 활동을 살펴보고자 함.
 -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발의-상임위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부의요구-본회의 의결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고찰하고자 함.
 -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한 정부여당 주도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그리고 그 이유의 정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과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공백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사법을 정부여당과 대한간호협회가 재추진하게 된 맥락을 분석하고자 함.
- 제22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과 의의는
 -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강선우의원안>과 국민의힘의 당론인 <추경호의원안>을 비롯해 간호뿐 아니라 돌봄의 영역을 담아내고자 한 <이수진의의원안>과 <김선민의원안>의 주요 내용과 체계를 고찰하고자 함.
 - 간호관련 법률안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쟁점(법 제명,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간호사 업무와 진료지원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의정갈등으로 인한 장기화된 진료공백에 이어 다수 간호인력이 포함된 전국보건

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제22대 간호법이 제정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제정된 간호법에 대한 언론, 간호계, 정부와 국회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인식의 문제와 간호법의 체계와 내용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간호법의 문리해석과 주요 내용이 결정되는 맥락을 고찰하고자 함.

○ 결론에서 간호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향후과제에 관한 방향을 제시

- 간호법 제정의 의의는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법」의 체계는 의학적 치료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보건기관, 학교, 산업현장, 각종 사회 복지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하는 간호를 규율할 수 없는 한계를 제정 간호법으로 해소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공공정책으로서 간호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집행되는 간호정책의 시대가 시작됨.
- 간호법 제정 이후 향후과제는 간호법이 「의료법」이라는 낡은 체계에서 벗어나는 제정과정이 간호법의 주요 목적에서 벗어나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담아내지 못함.
- 다만, 간호법 체계가 간호법의 본래 목적에 대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간호법 조문들이 담아내지 못한 것이므로, 간호법 개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것임.

제2장 본 론

제1절 제21대 국회 간호법안의 입법과정과 쟁점

1. 정치가 약속한 간호법 제정

(1) 제21대 국회 정당별 정책 협약 : 간호법 제정

- 2020년 4월 9일 (사)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간의 간호·조산법 제정 정책협약⁵⁾
- 2020년 4월 10일 (사)대한간호협회와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간의 간호법 제정 정책협약⁶⁾
- 2020년 4월 12일 (사)대한간호협회와 현 국민의힘인 국민의당 간의 간호법 제정 정책협약⁷⁾

(2) 제21대 국회 정당별 간호법 발의

- 2021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보건복지위원장) 간호법 대표발의 (공동발의 49인)
- 2021년 3월 25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 간호법 대표발의(공동발의 33인)

5) 데일리메디, “간협,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정책협약식 - 간호사 근로환경 처우개선 및 간호·조산법 제정”, 2020.04.09.

6) 데일리메디, “간협, 미래통합당·한국당과 간호정책협약식 - 간호법 제정,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적극 협력” 다짐, 2020.04.10.

7) 메디게이트뉴스, “간협-국민의당, 간호정책 협약식 개최 간호정책협약식 - 근로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 등 간호정책 확립”, 2020.04.13.

○ 2021년 3월 25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 간호·조산법 대표발의(공동발의 33인)

〈표 1〉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간호법 (국민의힘)	간호법 (더불어민주당)	간호·조산법 (국민의당)
적용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업무 (진료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u>지도 하에</u>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u>지도 또는 처방 하에</u>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u>지도 또는 처방 하에</u>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의료법」과 동일	「의료법」과 동일	「의료법」과 동일
간호종합 계획	-	간호종합계획(매 5년) 실태조사(매 3년)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종합계획(매 5년) 실태조사(매 3년)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근무환경 처우개선	국가지자체: 간호사등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지원	국가지자체: 간호사등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지원	국가지자체: 간호사등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3)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 간호법 제정

- 2022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간호법 제정 등의 공약을 발표

〈그림 1〉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공약(간호부문)

☐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 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대폭 확충

- 지역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 인재 집중 선발·육성
-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 이재명 후보는 간호법 제정 추진 입장 밝혀(2022년 1월 11일 페이스 북)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 2년 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간호사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간호사 분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합니다.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22년 3월 4일 윤석열 위키공약: 간호법 제정 추진 등

〈그림 2〉 윤석열 공약위키(간호 개선방안)



- ①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 ②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
- ③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 ④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대비 **간호학사 특별과정 신설 추진**
- ⑤ ICT기반 **일차의료·장기요양 방문간호 연계체계 구축**

-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선대위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등을 약속하는 정책협약 체결⁸⁾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국민의 힘은 간호법이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을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 함.

8)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대한간호협회의 정책협약식에는 원희룡 선거대책본부장, 임이자 선거직능위원장, 강기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였다.

2. 제21대 국회 간호법안의 입법과정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 2021년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간호법안 공청회
 - 간호법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를 제외, 환자대표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술인 구성
 - 진술인은 강주성(간병시민연대 대표), 김승연(서울연구원 도시사회 연구실장),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진(법무법인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과 이주열(남서울대학교 교수)
- 데일리메디, “간호단독법 첫 공청회… ‘시대적 흐름’ 이구동성”, 2021.08.24.
전문가·정치인 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 ‘의사-간호사 수평관계 확립’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등

- 2021년 11월 24일, 첫 번째 법안심사
 - 여당과 야당 위원들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보건복지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음.⁹⁾
 - 보건복지부가 2021년 정기국회 내에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함.
- 2022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022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과 서영석의원 등은 간호(조산)법안의 심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조산)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¹⁰⁾을 함

9) 후생신보, “국회 복지위, ‘간호법 제정 필요성 공감’, 2021.11.25.

10) “……지난 총선 때처럼 더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조산)법안 심사를 계속 요구하여, 2022년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 2022년 2월 10일, 두 번째 법안심사

- 제1차 법안심사에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보건복지부 질타,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¹¹⁾
-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으니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회가 직접 해결하자는 의견도 제시

○ 2022년 4월 27일, 세 번째 법안심사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간호법안을 심사,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
- 보건복지부는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¹²⁾을 전제로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이후로 의결 보류를 요구

○ 2022년 5월 9일, 네 번째 법안심사

- 일방적인 법안심사 회의 통보라며 최연숙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불참
-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관 직역단체와의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간사의 반대로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출처 : 청년의사, “더민주, 간호법 제정, 골든타임 바로 지금”, 2022.01.17.).

11) 매일신문, “국회, 간호법 조정안 마련 못한 정부에 질타”, 2022.02.10.

12) “보건복지부 제2차관: ……그런데 직역단체들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달라 그러면 논의해 주신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신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경보다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회 속기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022년 4월 27일 내용 일부 발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간호법 상정

- 국민의힘 간사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재심사를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축조심사를 할 것을 제안
- 최연숙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전원 퇴장하였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의결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부의 요구 등

- 2022년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국민의힘 간사 반대, 간호법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불발
- 2022년 9월 28일, 이재명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간호법 등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니다. 여야공동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동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¹³⁾라고 함.
 -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이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간호법 체계·자구 심사를 지속적으로 요구
-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요청
 - 2022년 12월 9일, 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대안 등 체계·자구심사 기한이 경과된 법률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임시회 내 처리 요구
 - 2022년 12월 21일, ‘간호법대안 등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가 제401회 국회(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¹⁴⁾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는 공문을

13)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400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2022), 23면.

14)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

○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요구

- 2023년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대안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
-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결 요건(보건복지위원회 24인 위원 중 15인 찬성)을 충족하는 16인이 찬성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가결

○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본회의 의결

- 「간호법」 본회의 부의에 대한 투표 결과는 전체 262표 중 찬성(166표), 반대(94표), 기권(1표), 무효(1표)로 가결
-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의 의결 전에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였으나, 최연숙의원과 김예지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서 「간호법 제정안」 ‘찬성’ 투표

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 간호법 대안

(1)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

○ 보건복지부 태도 변화

- 2023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¹⁵⁾ 주장. 보건복지부 차관의 국회 입법권 논란 제기
- 2023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 이라고 발언을 하자, 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차관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박민수 제2차관이 발언 중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¹⁶⁾고 함.

○ 국민의힘 태도 변화

- 2023년 3월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의료관계인이 모두 의료법 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 달라는 상황이 생긴다”¹⁷⁾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
- 또한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일으켜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이라고 주장
-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 을 공약한 바 없다.”¹⁸⁾고 입장 표명

15) 의사신문, “복지부 ‘간호법 제정 민주적 숙의 필요…보건의료직역 협업 중요’ ”, 2023.02.07.

1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간호법, 야당 단독처리’ 발언에 민주당 ‘허위 발언 당장 사과하라’ ”, 2023.02.09.

17) 미디어스, “간호법은 정권 타격 목적, 주호영 주장에 ‘대선총선 공약 파기’ ”, 2023.03.27.

18) 의협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 공약한 바 없어“ 공식화”, 2023.05.03.

(2)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 간호법 중재안

〈표 2〉 간호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

구분	간호법 (국민의힘)	간호법 대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 중재안
법 제명	간호법	간호법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
목적	제1조(목적) 간호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u>지역사회</u> 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u><지역사회' 삭제></u>
적용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좌 동〉	〈좌 동〉
간호사 업무 〈진료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의료법」과 동일〉	〈삭 제〉
간호조무사 업무	「의료법」과 동일	〈좌 동〉	〈삭 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특성화고 간호학과	〈좌 동〉	특성화고 간호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
	간호학원(고교졸업자)	〈좌 동〉	〈좌 동〉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좌 동〉	〈삭 제〉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삭 제〉	〈좌 동〉

○ 2023년 4월 11일, 민·당·정 간담회 개최

- 참석자: 국민의힘(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보건복지부(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외),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각 2인
- 2023년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의결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반대 단체와 함께 사실상 대한간호협회에게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중재안 거부

- 대한간호협회는 민·당·정 간담회의 참석자가 간호법 제정 반대단체 중심으로 불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하며 간담회 도중에 퇴장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내용도 충분히 반영해 수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며, 여당이 또다시 시한을 미루기 위한 꼼수”¹⁹⁾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입

○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국민 대상으로 홍보

- 2023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대국민 홍보를 하였는데, 이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홍보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객관적 사실로 입증할 수 없다 보니 국가권력이 공정성을 상실

19) 한겨레,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민주당·간호협회 ‘수용불가’”, 2023.04.11.

하였다는 비판 제기

○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 반대 홍보

- 2023년 5월 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간호법안 이것이 문제입니다.’라는 자료<부록 5>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
- 주요 내용은 「간호법 제정안」이 ① 의료 협업을 저해 ② 환자를 돌보는데 걸림돌 ③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흔들고 있음 ④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

(4)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 2023년 5월 14일, 정부여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

-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
-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
- 간호법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상실을 위협

○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임.
-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함.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함.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됨.

- 간호법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음.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간호법은 사회적 갈등이 큰 법으로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간호법은 전문 유관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
 - 간호법은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 초래
 - 간호법은 직역 간 충분한 협의의 숙의과정이 부족했으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함.

(5) 간호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한 이유

- 간호법이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유발
 - 간호법과 관련하여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이 유발된다는 주장의 실체는
 - ▶ 간호법의 진료 관련한 간호사 업무가 의사의 독자적인 진료업무 침해할 우려
 - ▶ 간호법 목적 조항에서의 지역사회 문구로 인해 간호업무 영역의 확장은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의 단초
 - ▶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고졸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차별
 - 간호법의 진료 관련한 간호사 면허 업무 = 「의료법」의 간호사 면허 업무
→ 그러므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면허 업무에 대한 법 적용이나 해석에 변화가 없으므로²⁰⁾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의사의 독자적인 진료업무가 침해될 우려가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조산법(의안번호 제9127호), 간호법안(의원법호 제9139호, 간호법안(의안번호 제9153호), 검토보고서, (2021), 36-37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은 현재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만 가능

▶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우려가 있는 주장은 허위사실

-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고졸 이하’ 학력 제한? 2022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전체 합격자 중 대졸(전문대 졸 포함)이 41%

▶ 그러므로 간호법 제정이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

〈표 3〉 2022년 간호조무사 최종 학력별 합격 현황²¹⁾

최종학력	응시자(명, %)	합격자(명, %)	합격률
고등학교	25,637명(61.3%)	20,387명(79.5%)	79.5%
대학교*	16,076명(38.4%)	14,241명(41.0%)	88.6%
석사 이상	122(0.3%)	97(0.3%)	79.5%
합계	41,835명(100.0%)	34,725명(100.0%)	83.0%

* 전문 및 일반대학 구분불가

→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이 아니므로, 간호법 제정으로 초래될 수 없음.

의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도하에’와 ‘보조’의 문언 중복을 해소하고 현행의 표현이 의사-간호사 간의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보다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한다는 우려를 시정하는 조치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적 업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 조치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21)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작성기준일(2023.05.15.) 발췌

- ▶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조문 내용은 2013년 4월 1일 보건복지부가 공포(참고자료 2). ‘학력 차별’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나 설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학력 차별’ 누명을 씌움.
-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초래?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현행 법령에서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 현황
 - ▶ 보건복지 관련 법령(23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년 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57년), 노인복지법(1980년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제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결핵예방법, 의료기기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자안전법,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기타 법령(20건) : 학교보건법(1967년 제정), 산업안전보건법(1982년 제정), 유아교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난구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 현행 「의료법」 상 의사 업무와 간호업무는 상호 배타적인 면허체계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의사업무를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듯이,
간호사 업무도 간호사 외에 그 어떤 보건의료인도 할 수 없다고 규정

- ▶ 1962년 「의료법」 전부개정 당시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²²⁾

○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 미흡

- 국민의힘과 대통령후보가 정책협약과 위키공약으로 약속
 -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는 정책 협약 체결
 -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위키공약으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
- 간호법(국민의힘 서정숙의원안),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안), 간호조산법(국민의힘 최연숙의원안)을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 대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 → 국회에서의 간호법 논의는 사회적 갈등 해소에 지나치게 치우친 타협과 양보로 인해 오히려 입법원칙과 취지가 손상되었음.
 - ▶ 간호법 대안은 3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으나 국민의힘의 정치적 변심으로 여야 합의를 파기
 - ▶ 간호법 대안의 체계와 내용은 <표 2>에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안은 대폭 수정 삭제한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의 체계와 내용은 대부분 수용
 - ▶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체계와 내용 대부분이 국민의힘 서정숙의원안(간호법)을 수용함으로 인해, 공적 간호돌봄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등 실속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는 비판

22) 제25조 (무면허자의 의료업무금지)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각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간호(사)법안의 재추진

(1)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 대한간호협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2023년 5월 16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는 용산 대통령 직무실 앞 기자회견
- 2023년 5월 17일 대한간호협회,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투쟁 선언’
 - 준법투쟁, 간호사의 준법투쟁은 진료 및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거부하는 것
 -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관관을 파면 촉구
 - 2023년 5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
 -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거획단을 출범.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가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
- 2023년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간호법은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한 정권임을 선언한 것
 -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
 -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김성주, 송기현, 남인순, 전해숙, 정춘숙, 강선우, 고영인, 강훈식, 이병훈, 최종윤, 윤준병의원이 참석

(2) 재추진 간호법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재추진

-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 결정
“간호법 부결은 윤대통령이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보건의료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간호법을 재추진할 방침”²³⁾
-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투쟁선언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에 미온적 태도
- 고영인의원실은 당초 간호법 재추진 방침과는 달리 유관지역(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과 협의를 통해 간호법의 체계와 내용의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유관직역들의 반대로 무산
 -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국민의힘 간호법 중재안 검토(대한간호협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 ▶ 일부 의료기사 업무 침해 관련, 간호사 업무 조항에서 “의료기사 업무는 제외한다.” 조문 추가 검토(대한간호협회가 조건부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의료기사단체는 입장을 바꿔 간호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무산됨)
- 더불어민주당의 재추진 간호법은 대한간호협회와의 합의를 전제로 유관직역 간의 협의로 인해 다소 늦은 2023년 11월 22일에 발의됨.
- 대표 및 공동발의 : 고영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재근·정춘숙·전혜숙·최혜영·김민석·한정애·강선우·김영주·남인순(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최연숙(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강은미(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조오섭·신정훈·이상한·권철승·김상화·정성호·김성주(이상 더불어민주당 타상임위 소속 위원)

23) 청년의사,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간호법’ 입법 재추진”, 2023.07.27.

〈표 4〉 재추진 간호법안 주요 내용 비교²⁴⁾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간호법대안 (대통령 거부안)	간호법 재추진안	
법률 명칭	간호법	좌동	수정 불필요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하 생략)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 종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하 생략)	‘지역사회’에 대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야를 열거 방식으로 기술
간호사 업무	현행 「의료법」과 동일	‘진료보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함	PA간호사 문제 해결 목적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현행 「의료법」과 동일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	‘고졸 이하’ 학력 차별이라는 오해 불식
간호종합 계획 등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	간호법안(김민석의원안) 재반영	재반영
간호사 등의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권 및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추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반영	반영	

24) 출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의원실

〈표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²⁵⁾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 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 2.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조정 3.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단체가 추천하는 20명 2.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20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20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나.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의안번호 제25571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2023.11.22.

-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안은 2023년 11월 22일에 발의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대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대안을 근간으로 마련
-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안 외에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조정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²⁶⁾도 발의
- 간호법 대안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²⁷⁾는 법 적용이나 해석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수정하였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 (‘간호종합계획 등’)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²⁸⁾도 재추진 간호법안에 포함

○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체계에 대한 관련 단체의 입장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입법테러”
 -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폐기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테러라고 비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간호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많은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입법 테러라 해도

26)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는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출처: 의안번호 제25571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7) 제1조(목적)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를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졸업자’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하였다.

28) 「의료법」 제27조 제6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과 함께 그에 관한 벌칙(제87조의 2 제3호의 2)을 신설하였다.

제87조의2 제3호의 2 “제2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를 신설하였다.(출처: 의안번호 제2223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2023. 5-6면.)

과언이 아니다”²⁹⁾라고 함.

- 보건복지부, “간호법 반대”

▶ 2023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야한다.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³⁰⁾고 간호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진행된 '의료법 체계 연구회'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

- 보건복지의료연대, “발의된 간호법이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등을 삭제했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³¹⁾며 간호법 반대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서 발표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³²⁾

(3) 재추진 간호사법 : 국민의힘

○ 2023년 5월 12일 국민의힘 이종성의원, 간호조무사 대학 양성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9) 동아일보, “윤재옥 “간호법·양곡법 재추진 민주당에 경악…입법 테러””, 2023.12.11.

30) 의협신문, “간호법 재발의…보건복지연대 “갈등 재현 원하나?””, 2023.11.22.

31) 메디컬옵저버,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 ... 간협과 의료연대 다시 논쟁 시작”, 2023.11.23.

32) 청년의사, “다시 발의된 '간호법'...간협 “환영” vs 간무협 등 “악법””, 2023.11.23.

- 특성화고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80조제1항제1호) 개정, 2011년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문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평택소재 모대학에서 개설한 보건간호조무전공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음.
-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파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의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이종성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전문대학은 물론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 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
- 2024년 3월 28일 국민의힘 유의동의원, 간호사법 대표발의
 - 대표 및 공동발의 위원 : 법안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모두 간호사법 대표 및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음(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종성의원 제외)
 - 주요 내용
 - ▶ 제1조(목적) “지역사회”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 방식으로 기술하여 예시
 -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증)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학(전문·전공대학 포함) 등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
 - ▶ 제12조(전문간호사의 업무) “…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간호사의 의사 면허업무 침해 논란
 - ▶ 제30조(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 간호사 의료기관 개설 논란

〈표 6〉 간호사법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간호법 대안 (대통령 거부권)	간호사법안
법 명칭	간호법	간호사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u>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u>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하 생략)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u>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사회복지시설 등</u>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하 생략)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현행 「의료법」 과 동일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간호사 업무	현행 「의료법」 과 동일	전문간호사는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위임이나 지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반영	반영
재택간호 전담기관	없음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현행 「의료법」 과 동일	삭제
간호인력 지원센터	반영	요양보호사 포함

○ 간호사법의 주요 내용과 체계에 대한 관련 단체의 입장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법(국민의힘 유의동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이나 체계에 대한 언급 없이 지지 성명 발표³³⁾
 - ▶ 2023년 4월 11일,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간호법 중재안’ 제시하자 대한간호협회는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거부 → 간호사법에는 ‘대학 등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 등 ‘간호법 중재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2023년 5월 12일,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는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파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의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 ▶ 2024년 5월 18일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선언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기관 삽관, 봉합 등의 부당한 불법 업무 지시 거부” → 간호사법 제12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의사의 업무로 규정한 후, 예외적으로 의사의 포괄적 포괄적 위임이나 지도하에 전문간호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규율하지 않은 채,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허용
-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건강돌봄시민행동, “멸절한 간호법은 거부, 간호사간호조무사 표 구걸용 국민의힘 간호사법 즉각 철회하라!”³⁴⁾는 성명서 발표
 - ▶ 정부는 간호법을 미끼로 국민과 간호사를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 “땀금없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간협이 의사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난리법석이라며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협까지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을 의사 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³⁵⁾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질질 끌어서 이용하려는 것이

33) 청년의사, “與, 'PA 합법화' 담은 '간호사법' 발의…간협 “환영””, 2024.03.29.

34) 헬스이슈&뉴스, “멸절한 간호법은 거부, 표 구걸용 간호사법 철회하라”, 2024.03.30.

35) 메디컬옵저버, “건강돌봄시민행동, 국민의힘에 간호법 심의 의결 요구”, 2024.03.13.

아니라면 당장, 즉각 간호법 처리 의사를 밝히고 답을 줄 것을 촉구”

- 개혁신당, 이준석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선거용으로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해 호기롭게 거부권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느냐고 비판”³⁶⁾

(4) 재추진 간호법<최연숙의원안>

○ 간호법(최연숙의원안)의 내용의 특성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으로 목적
 - 간호법(고영인의원안), 간호사법(유의동의원안)과의 최종적인 목적은 의료법의 목적과 유사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 그러나 간호법(최연숙의원안)은 의료법의 틀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간호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 제2조(정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간병인력과 간호서비스등에 대해서도 정의
 - ▶ 간병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서 자활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간호사등,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 ▶ 간호서비스등,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36) 메디게이트뉴스, “간호법 꺼내든 尹에 황당한 야권…민주당·개혁신당 반응 갈려”, 2024.03.08.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의료법」과 같음.
- 제11조(간호사의 업무) 「의료법」과 같음. 다만, 진료 관련 조문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여, PA간호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 제1항제2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 ▶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제5장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간호법(고영인의원안) 및 간호사법(유의동의원안)과 같음.
- 제27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제공)
 - ▶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 의료기관 책임 하에 수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사항은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관련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만 간호법으로 규율
 - ▶ 제2항 “간호서비스등이 필요한 환자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등의 업무는 간호사 책임 하에 제공”
-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등,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요양보호사, 간병지원인력)이 환자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간호사 책임 하에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율
- 제32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간호인력 지원센터 대상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

- ▶ 간호사법의 간호인력 지원센터 대상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간호법(최연숙의원안·고영인의원안), 간호사법(유의동의원안)의 차이
 - 간호법(고영인의원안)나 간호사법(유의동의원안)의 경우 입법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간호서비스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간호법(고영인의원안)나 간호사법(유의동의원안) 모두 “돌봄(간병)을 제공할 주체뿐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 등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간호·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반면, 최연숙 의원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재가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와 통합돌봄을 제공할 주체를 모두 규정”³⁷⁾

(5) 재추진 간호(사)법에 관한 평가

- 더불어민주당 간호법(고영인의원안) 재추진 평가
 -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제21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 달 앞두고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심사 - 전체회의 의결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의결’이라는 입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
 -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재추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됨.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탈당 등으로 제21대 전반기와 같이 입법을 주도할 동력을 상실
- 국민의힘 간호사법(유의동의원안) 재추진 평가
 -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메꾸는 수단으로 간호사법 제정 추진
 - ▶ 2024년 2월 1일,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5년 간 매년 2천 명

37) 메디컬업저버, “최연숙 의원, 간호법 재발의... 시민단체 “간호법안 더이상 늦추면 안 돼“, 2024.04.23.

증원 결정 발표

- ▶ 2024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서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하는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 38)
- ▶ 2024년 2월 20일, 전공의 집단행동 시작, “보건복지부는 20일 밤 10시 기준 전국 100개 병원(전체 전공의 95% 근무)에서 모두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 39)
- ▶ 2024년 2월 27일,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진료지원 시범사업 전격 시행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작일에 간호사법안 발의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작일인 2024년 3월 28일 간호사법안 발의하였는데,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인 2024년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다시 한번 간호(사)법은 폐기
 - ▶ 간호관련 법률을 심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국민의힘), 특히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조차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음.
- 2024년 5월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 거부 →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간호법에 대한 국회 심의도 거부
- 보건복지부, 국회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재추진) 입법 주도
 -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당내 공천 탈락), 국민의힘 간사(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더불어민주당 간사(당내 공천 탈락) 등으로 제21대 국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주도,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이번 간호법안에 담을 방침”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복지부에서도 이번엔

38) 한겨레, “복지부 “의사 진료 거부 땀, 비대면진료 전면확대PA 간호사 활용””, 2024.02.16.

39) 한겨레, “100대 병원 전공의 7813명 출근 거부…정부 “집단행동 구속수사””, 2024.02.22.

이 법안을 처리를 해보자는 입장으로 선회” 40)

○ 간호법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행보

- 대한간호협회의 진료공백을 메꾸는 PA시범사업 입장 변화
 - ▶ 2024년 2월 18일,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 ▶ 그러나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PA간호사 시범사업 관련 ‘간호사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을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하여 마련⁴¹⁾ → 2024년 3월 8일 대한간호협회,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합니다. 대통령님! 간호법안이 필요합니다.” ⁴²⁾ 라는 기자회견 개최
 - ▶ 2024년 5월 23일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심사가 불가능해지자, “간호법 없는 시범사업, 전면 보이콧 선언”
- 대한간호협회, 2023년 5월 17일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투쟁 선언’ 이후 1년 만의 간호법 제정 촉구 대규모 집회
 - ▶ 그러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간호법 심사를 거부하여 법안 논의는커녕 상정조차되지 못한채 임기만료 폐기
- 2022년 4월 20일 보건의료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 8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⁴³⁾ → 그러나 대다수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재추진 과정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연대를 이어가지 않음.

40) KBS뉴스, “복지부, ‘간호법 수정안’ 국회 제출… ‘PA간호사’ 법제화도 추진”, 2024.05.02.

41)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3.8.금.중앙일보]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2024.03.08.

42) 메디칼업저버, “간협 “尹 정부 의료개혁 지지…간호법 재추진해야””, 2024.03.08.

43) 메디포뉴스, “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사회 각계 참여”, 2022.04.21.

제2절 제22대 국회 간호법 제정과 의의

1. 간호관련 법률안의 개요

(1) 간호법안<강선우의원안>

- 2024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의원이 간호법안 대표발의(공동발의 20인)
 - 2024년 6월 20일 간호법(강선우의원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⁴⁴⁾
- 주요 내용 및 체계
 - 제21대 재추진 간호법(고영인의의원안)을 토대로 일부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 수정

〈표 7〉 간호법(고영인의의원과 강선우의원안) 비교

구분	간호법 (고영인의의원안)	간호법 (강선우의원안)
간호사 업무	제1항제2호(진료보조 업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항제2호(진료보조 업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
간호 정책 심의 위원회	<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간호사 중앙회 추천 비영리단체 추천 간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회 구성(임명 및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

44) 연합뉴스, “민주,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당론채택…입법 재추진”, 2024.06.20.

(2)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추경호의원안>

- 2024년 6월 2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의원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공동발의 108인)
 - 2024년 6월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추경호의원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⁴⁵⁾하였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 참여
- 주요 내용 및 체계
 - 제21대 재추진 간호법(유의동의원안)과는 법 제명, 진료지원업무 등의 핵심 사항이 수정되었고, 의료기관인 재택간호전담기관은 삭제됨.

<표 8> 국민의힘 간호관련 법률 비교(유의동의원안과 추경호의원안)

구분	유의동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법 명칭	간호사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학 등에서 양성 허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 <대학 등에서 양성 허용>
진료지원 업무	제12조(전문간호사의 업무) 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
재택간호 전담기관	재택간호 전담기관(의료기관) 간호사 개설권 부여	<삭 제>

45) 데일리메디, “의정 갈등 최고조 상황 속 '간호법' 재추진”, 2024.06.22.

(3) 간호법<이수진의원안>

- 2024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이 간호법안 대표발의(공동발의 11인)
- 주요 내용 및 체계
 - 정의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 간호사등, 간호서비스등,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 ▶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강선우의원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등’ 만을 규정
 - ▶ ‘간병인력, 간호서비스등’ 은 제21대 간호법(최연숙의원안)에서 규정
 - ▶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추경호의원안)에서 규정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
 -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은 모든 의료기관뿐 아니라 재가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
 -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 「의료법」과 같음.
 - ▶ (진료관련)의사 등 ‘지도’ → ‘지도 또는 처방’ , ‘진료의 보조’ → ‘환진료에 필요한 업무’ 로 문구 수정
 - ▶ 진료관련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하위법령으로 위임(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제4항⁴⁶⁾을 제외한 6개항을 간호법으로 규정

46)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수범자가 의료기관이거나 의료기관 관련 조항은 제4항뿐 아니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도 해당되므로, 간호법에서 규율하기 적절한 조항은 제1항과 제7항
- ▶ 제5항 “간호서비스등이 필요한 환자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등의 업무는 간호사 책임 하에 제공” →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등,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요양보호사, 간병지원인력)이 환자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간호사 책임 하에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율
- 교대근무지원 및 교육지원 :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사등(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력)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해 교대근무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대근무를 할 수 없는 간호사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 의료기관 장은 간호사의 교육훈련 중인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추가인력 상시 배치

(4) 간호법<김선민의원안>

- 2024년 7월 19일 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선민의원이 간호법안 대표발의(공동발의 11인)
- 주요 내용 및 체계
 - 정의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 간호사등, 간호서비스등
 - ▶ ‘간병인력, 간호서비스등’ 은 제21대 간호법(최연숙의원안)에서 규정
 -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 「의료법」 과 같음.
 - 간호사 업무 : 진료관련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하위법령으로 위임

- 간호서비스의 제공 등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제1항만 간호법으로 규정 →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료기관 관련 조항이며 법 준수 의무가 있는 수범자가 의료기관
- ▶ 제2항 “간호서비스등이 필요한 환자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등에 관한 적정배치 기준 등 시책 마련” →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등에 대한 모형(간호사등의 적정 배치기준)에 관한 시책을 마련

2.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주요 쟁점

(1) 법률의 제명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제명

소속 정당	대표발의 의원	법률 제명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국민의힘	추경호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의원	간호법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의원	간호법

○ 법률 제명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

- “「간호법」이라는 제명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업무범위, 권리 및 책임 등 간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간호 이원화 우려를 해소하고

간호라는 직무가 아닌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임을 강조” 47)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등 법체계 고려하여 간호사 직업에 관한 법률로서 제명 논의가 필요” 48)하고, “의료-간호 이원화라는 관련 단체의 우려 해소 및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명을 결정” 49)

○ 법 제명 관련한 보건복지부 의견의 문제

- 간호법은 「의료법」의 하위 법체계가 아니다
 - ▶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헌법>과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체계화되어 있으며,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고도의 위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⁵⁰⁾.



<그림 3> 법령의 위계

- ▶ 간호법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 까지도 법령의 위계 상 법률로서 동등한 지위

47)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 2024.8.27., 28면.

48)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28면.

49)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28면.

50) 이상희, “법령 체계와 입법절차”, 법제처, (2009), 96면 발췌.

- ▶ 「의료법」 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거짓이며, 간호법이 “다른 법률 및 「의료법」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타 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한 것을 두고, (간호법이) 「의료법」 밑의 직역별 하위 법체계 관계가 설정”⁵¹⁾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 의료와 간호의 이원화 우려 관련한 문제

- ▶ 낡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 개념의 불명확성 : 「의료법」에는 법 해석과 집행의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의료법」의 조항 내에 정의 규정 자체가 없음)
- 의료법 상 ‘의료’의 개념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⁵²⁾이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⁵³⁾고 규정
- 또한 「의료법」 상 ‘의료’는 의사의 임무(면허업무)는 규정하고 있어, 의료행위자체가 의사의 면허업무로 해석하는 잘못된 경향이 나타남.
- 낡은 「의료법」이 아닌 객관적 실체로 작동하고 있는 ‘의료’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약사와 의료기사의 면허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
- ▶ 의사단체가 우려한다는 의료와 간호의 이원화에서 의료는 의사의 면허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 업무에서 간호사 업무를 이원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상충되는 것임.
- ▶ 현행 보건의료법제는 의료와 간호뿐 아니라 약사(藥事), 의료기사 업무 모두

51)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9면.

52)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5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상호 배타적인 면허체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적 의료행위인 진료업무(의사 면허업무)와는 관계는 ‘처방’ 내지는 ‘지도’ 를 상호협력을 하도록 규정

- 의료와 간호 이원화는 관련 단체의 우려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 5월 16일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였음.
 - ▶ 2022년 5월 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와 간호를 분리하는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민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행착오적인 법안이라고 진단이 나왔다.”⁵⁴⁾고 함.
 - ▶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습니다”⁵⁵⁾라고 함.
 - ▶ 2022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모두 발언에서 “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⁵⁶⁾고 밝힘.

○ 간호법 : 법 제명의 타당성

- 간호법의 제정 목적은 직역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
- 제1조(목적)은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의 제공을 위해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
-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 ▶ ‘간호사등’ 이라는 직역과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 이라는 직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 ▶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건강의 증진’ 에 이바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간호

54) 의협신문, “의료간호 ‘분절’ 간호단독법, 질 낮은 서비스…국민 ‘피해’ ”, 2022.05.03.

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2023.05.15.

56) 메디파나뉴스, “[전문] 윤 대통령 “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 국민 불안감 초래”, 2022.05.16.

관련 사항은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 하는 것임.

- ▶ 그러므로 직무 중심으로 간호사등의 직역을 포괄하여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법 제명은 간호법

(2) 목적 조항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목적

강선우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이 법은 모든 국민이 <u>보건 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이 법은 모든 국민이 <u>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이 법은 모든 국민이 <u>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 <김선민의원안>은 간호활동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한 반면, <강선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원안>은 간호활동영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열거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요양보호사, 간병지원인력)이 의료기관과 그 외 다양한 영역(지역사회)에서 간호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수진의원안>과 <김선민의원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강선우의원안>과 <추경호의원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

- 간호와 연계된 간병(돌봄)서비스가 지향하고 구현할 수 있는 궁극적 목적은
존엄한 돌봄 내지는 삶의 질 향상

○ 목적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⁵⁷⁾

- ‘지역사회’ 용어는 제21대 국회 의결안에서 사용되었는데, 지역사회라는 포괄
적인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일부 직역단체의 우려가 제기
된 바 있음.
- <강선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은 ‘지역사회’ 라는 용어 대신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부 직역 단체의 우려를 완화하고, 의료기관 외 영역에서 간호서비스가 다양화
전문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 다만 일부 직역단체에서는 제정안이
비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의견 : 제21 법안 논의 당시 관련 단체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실제 활동 중인 영역을 열거
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

○ 목적 조항 관련 국회 심사참고자료의 문제

- ‘지역사회’ 와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법리적 검증
 - ▶ 간호법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대한 예외규정 없이 의료기관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
 - ▶ 보건복지분야 중 비의료기관 그 어디에도 개원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간호법의 목적 또한 모든 국민에게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등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원

57)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29면.

자체에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음.

- ▶ 객관적 사실 또는 합리적 의심으로도 검증하지 않은 일부 관련단체의 우려를 법률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 간호법 목적 조항에서 규정한 ‘지역사회’에 대한 해석은 의료기관 이외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간호사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공간
-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 용어가 간호업무의 무한히 확장하거나 불법의료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일부 단체가 주장
- ▶ 간호업무의 확장은 다른 법령에서 간호사들에 관한 배치기준이 신설될 경우에만 가능
- ▶ 의료인인 간호사는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불법의료행위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3) 정의 조항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정의 조항

강선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원안	김선민의원안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사등	간호사등	간병인력	간병인력
	의료기관	간호사등	간호사등
	보건의료기관	간호서비스등	간호서비스등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 <강선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 ▶ 사실 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적용대상으로 정의
 - ▶ <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의 정의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족(蛇足)
 - ▶ 간호법 목적 조항은 간호사등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할 간호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음.
 - <이수진의의원안>과 <김선민의의원안>
 -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을 적용대상으로 정의(“간호사등”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
 - ▶ 간병인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간병지원인력
 - ▶ 간호법 목적 조항에서의 국민에게 제공할 간호 혜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서비스등으로 구분, 간호서비스등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의
- 정의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⁵⁸⁾
- 규율대상의 범위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대상 업역의 본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 제21대 국회 의결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호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바 있음.
 -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다양화·전문화된 간호업무와 기능적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지만, 법률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의료의 영역과 구분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또는 가사활동)의 지원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의료행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

58)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32~33면.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의견 : 수행가능 업무 및 양성체계가 상이한 간병인력을 같은 법안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체계적 검토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함.

○ 정의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의 문제

-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호와 상이하다는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제21대 국회 검토보고서에 제출한 의견
 - ▶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이 있음.
 - ▶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므로,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업무는 기능적 협업을 넘어 간호업무인 건강증진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치료적 의료행위와는 달리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회복, 악화방지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노인돌봄에 연계되어야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의견의 문제 : 수행 가능 업무 및 양성체계가 상이한 간병인력을 같은 법안에서 규율하는 것에 관한 법체계적 검토
 - ▶ 「의료법」 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으로 간병지원인력을 함께 규율하고 있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⁵⁹⁾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 법 제 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으로 영양보호사와 함께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를 규정하고 있음.

- ▶ 간호법의 정의 조항에서 간병인력(요양보호사, 간병지원인력)에 관한 적용범위는 양성체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간병(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 ▶ 수행 가능 업무가 상이할 뿐 아니라 배타적인 면허체계인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업무는 노인돌봄업무와 상이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간호법에서 간병인력을 규율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 <강선우의원안> 제21대 국회에서 의결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중 ‘우선 적용’ 문구에 논란으로 최종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삭제한 합의를 존중
- <추경호의원안>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을 따른다.”라고 규정
- <이수진의의원안>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

가. 영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과 「의료법」을 따른다.” 라고 규정

- <김선민의원안> “간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을 따른다.” 라고 규정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⁶⁰⁾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간 해석·집행상의 모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법률의 우선순위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 ▶ 간호법 제정안 우선 적용 시, 간호사-간호조무사 지도관계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 개별법상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인력 배치기준 및 업무 규정에서 인정하는 ‘간호사를 대체한 간호조무사 채용 및 업무 수행’ 방식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간호조무사협회-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 ‘간호사등의 인력배치기준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 개별법)을 우선 적용함을 명시함으로써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정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간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② 간호사등의 인력배치기준 및 업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의 문제

- 의료인 의료행위를 같은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대체를 허용할 때,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하는 것은 보건의료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뿐 아니라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무력화는 것

60)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32~39면.

- ▶ 같은 법률인 「의료법」에서 간호사 면허업무인 진료보조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하는 경우의 입법 사례는 명확한 예외 규정(공간, 업무한계 등)을 법률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제80조2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다른 법률에서 의사의 면허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대체)하는 경우의 입법 사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예외 규정(공간, 시간, 업무한계 등)을 법률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⁶¹⁾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⁶²⁾를 할 수 있다.

6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 다른 법령에서의 간호사등의 배치(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규정은 위헌·위법적 일뿐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 입법의 산물
- ▶ 다른 법령(권위주의 시대에 제정 또는 개정된 40여 개의 행정입법)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면허·자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만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헌·위법적 논란이 제기됨.

(5)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

- <강선우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김선민의의원> : 현행 의료법과 동일 즉,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가 특성화고 간호학과, 간호학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1,520시간)을 이수할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
- <추경호의원안> 학력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을 추가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⁶³⁾

- 검토의견 : 간호학원,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등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여, 학력 상한 규정이라는 이견을 해소하려는 취지
- <추경호의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상응하는 교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생략)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63)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67면.

수준을 갖춘 자” 추가

- ▶ 안 제6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 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간호조무사 학력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
- ▶ 다만, ‘각 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 의견 : <추경호의원안 수용> 간호조무사 등 간호관련인력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추경호의원안과 같이 확대할 필요
-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간호교육학화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의견⁶⁴⁾
 - ▶ 교육부 : <추경호의원안> 제6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법령 제정 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 시도교육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의견 : <추경호의원안> 제6조제1항제7호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간호조무과 신설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중등직업교육 발전 저해 및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차별·취업기회 축소 등이 우려됨. 간호조무사 등 간호관련인력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추경호의원안과 같이 확대할 필요
 - ▶ 중등간호교육학화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의견 : <추경호의원안> 제6조제1항제7호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간호조무사 양성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되므로, 간호조무사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직업계고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및 취업기회를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동 조항의 삭제 필요함.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 관련한 정부여당의 주장⁶⁵⁾ 등

64)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68면.

65) 국회 회의록, “제416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내용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간호법<강선우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김선민의의원>과 현행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학력 제한(차별),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 보건복지부 차관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해서 곧 바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학이라는 말이 없으니, 대통령령을 마련할 때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와 정부여당의 주장 등의 문제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쟁점은 학력차별이 아니라 대학(전공 또는 전문대학 포함)에서 간호조무과 신설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 여부에 관한 것
 - ▶ 학력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다닌 경력으로 해당 학교의 졸업 내지는 학위 수여에 관한 것으로,
 - ▶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차별이라 함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규정할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
 -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차별 해소는 ‘고등학교 졸업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
 -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라고 함.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2년 간호조무사 최종학력 별 합격자 14,241명(41%)이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 ▶ 그러므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여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발췌, 2024.07.22.

- 간호법<강선우의원안, 이수진의원안, 김선민의원>과 현행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음.
 - ▶ 간호조무사는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들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양성소, 간호학원에서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부여
 - ▶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의 침해는 대학(전공 또는 전문대학 포함) 등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나 대학 등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추경호>의원안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즉, ‘제1호에서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추었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대통령령 위임과 무관하게 일반대학, 전문대학, 전공대학 등에서 간호조무과를 신설하여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음.
 - ▶ ‘제1호에서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이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상응하는 교육수준
 - ▶ 2011년 법제처는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같은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학 등에서 간호조무과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과정(1,520시간)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음.
 -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조무사 및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고, 이후로는 법령에서 정한 양성기관만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음.
 - ▶ <추경호의원안>의 ‘제1호에서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추었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된 사람’은 2011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교육수준을 갖춘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학 등에서 간호조무과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과정(1,520시간)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음. →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간호법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

-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간호교육학회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교육 관련한 직접적인 관계부처이자 이해당사자임에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의 간담회도 없이 <추경호의원안>만을 수용

(6) 간호사 업무와 진료지원업무 조항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간호사 업무와 진료지원 간호사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강선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김선민의의원>의 간호사 업무(진료관련 제외) 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표 9> 간호사 업무(진료관련 제외) 「의료법」과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 비교

「의료법」 간호사 업무 (간호사 업무 중 진료관련 제외)	간호법안 <강선우추경호이수진김선민의의원안>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과 같음.
다.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강선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김선민의의원>의 진료관련 간호사 업무에 대한 규정

〈표 10〉 현행 「의료법」과 <강선우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김선민의의원>의 진료관련
간호사와 간호사 업무 비교

「의료법」	강선우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김선민의의원안
제2조제5호. 간호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임부로 한다.	제11조(간호사의 업무) -----각목의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각목의 -----.	제13조(간호사의 업무) -----각목의 -----.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2. 「의료법」과 같음.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2. 「의료법」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는 제외한다.	② <좌 동>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1〉 현행 「의료법」과 추경호위원의 진료지원 간호사와 간호사업무 비교

「의료법」	추경호의원안
제2조제5호. 간호사는 다음 <u>각목의</u> 업무를 임부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제11조(간호사의 업무) ---- <u>각목의</u> ----- 1. ~ 4. 「의료법」과 같음.
〈 <u>신 설</u> 〉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u>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⁶⁶⁾

- 검토의견(1) 간호사 업무 중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66)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45~47면.

변경하는 것은 ‘처방’을 추가하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시 PA 간호사의 불법성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간호사 업무관계의 협력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직역단체(의협)로부터 결국 간호사에게 의사 지도·감독 없이도 의사의 업무범위인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2) 진료관련 간호사 업무 중 의료기사 등의 업무 제외(강선우이수진의 원안)의 경우 법 문언상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등의 업무 일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의료기사 등의 업무 제외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직역별로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간호사의 업무조항에 타 직역의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할 실익이 낮음.
 - ▶ 간호사의료기사 간의 채혈, 간단한 재활보조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첩적으로 수행가능 업무로 해석
- 검토의견(3) <추경호의원안>은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 마련한 것으로 PA간호사 불법 업무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
 - ▶ 진료지원업무는 고난도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허용
 - ▶ 검사진단·투약·치료·처치 등 행위 열거에 대한 관련 직역단체의 우려를 종식 시키기 위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진료와 치료행위’로 수정
 - ▶ ‘포괄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라는 주장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판례에서 유사한 용례로 사용하는 ‘일반적’이라는 단어로 변경
 - ▶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있어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진료지원업무로서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제13조제1항에 명시 필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 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요건과 교육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법안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 추가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 관련한 국회 심사참고자료의 문제

- 검토의견(1) “일부 직역단체(의협)로부터 결국 간호사에게 의사 지도감독 없이도 의사의 업무범위인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

- ▶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도하에’와 ‘보조’의 문언 중복을 해소하고 현행의 표현이 의사-간호사 간의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보다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한다는 우려를 시정하는 조치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적 업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 조치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함.⁶⁷⁾
- ▶ 2007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관련 간호사 업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처치와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간호사의 환자진료 관련 업무와 보건활동을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⁶⁸⁾ →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자기 부정
- ▶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규정하더라도, ‘지도’ 또는 ‘지도 또는 처방’을 수행하는 주체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이므로, “간호사에게 의사 지도감독 없이도 의사의 업무범위인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언급될 가치가 없음.

6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의 검토보고서, (2021), 36-37면.

68)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2007.05.16.)에서의 간호사 업무 규정 제34조(간호사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영양상 간호를 하는 데에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및 영양상의 간호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처치와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수행 및 보건 활동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보건활동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는 제외” 문구 규정에 관련하여

- ▶ 간호사 업무조항에 타 직역 업무 제외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 그러나 그 근거는 「의료법」 제27조가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⁶⁹⁾에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⁷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채혈, 간단한 재활보조 등을 간호사의료기사 간의 중첩적 수행가능 업무라는 보건복지부 해석은 로 해석하고 있는 채혈, 간단한 재활보조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⁷¹⁾를 상충 → (혈액)의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업무이며,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지도 하에 재활에 관한 업무⁷²⁾

69)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7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7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 검토의견(3) <추경호의원안>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 ▶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는 의사가 면허업무가 아니라 간호사 면허업무이므로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하고 하는 문구는 삭제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구의 의미는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간호사에게 허용한다는 것’
 - ▶ 진료지원업무를 고난도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라고 법률적 해석은 정의 조항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를 규정해야 하는 것이지, 법률적 정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음.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서비스등) 제공 등

- 제22대 간호관련 법률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또는 간호서비스 등에 관한 조항
 - <강선우의원안>과 <이수진의원안>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간호법에 이관하여 규정, 단 「의료법」과 달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
 - <이수진의원안>은 “간호서비스 등(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이 제공하는 업무)이 필요한 환자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는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외에 요양병원,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책임에 대해 규정

1. 임상병리사 가. 4) 혈액의 채열·제제·제조·조작·보존·관리·사용
 3. 물리치료사 가.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4. 작업치료사 가. 2) 삼킨장애 재활치료 3) 인지 재활치료 5) 운전 재활치료 6) 직업 재활치료

- <김선민의원안>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7호를 간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을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재가 등에서 간호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등(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의 적정배치기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추경호의원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또는 간호서비스 등에 관한 조항이 없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간호서비스 등) 조항 관련 국회 심사참고자료⁷³⁾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의 책임 하에 제공되어야 하나,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의협·간무협 등)이 제기된 바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 보건복지부 의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료법」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간호서비스 등) 조항 관련 국회 심사참고자료⁷⁴⁾의 문제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문을 분석해 보면,
 - ▶ 제1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밖의 간병지원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제2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⁷⁵⁾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2대

73)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103~47면.

74) 국회, 앞의 심사참고자료, 2024.8.27., 103~47면.

75)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2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간호관련 법률안<강선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김선민의의원>의
간호사 업무(진료관련 제외) 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 ▶ 제3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 제4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 ▶ 제5호는 보호자 등의 입원실 상주 제한과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 등 안전
관리에 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에 관한 사항
 - ▶ 제6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 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
 - ▶ 제7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책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항
중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이며, 제1호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정의이고, 제7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공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 ▶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의료법」에 존치하고,
 - ▶ 제1호와 제7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 간호종합계획 수립·심의 및 집행을 규율하고 있는 간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예외로 군
보건의료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바람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발간한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의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는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과 재활지원인력)이 수행하고 있음.

〈표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⁷⁶⁾

제공인력 구분	업무분담 예시
간호사	전문영역의 간호행위, 기본 간호행위,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제공 인력 지도·감독 등 팀 간호 총괄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부서 물품 및 환경정리 등
병동지원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일상생활 보조(일반식 보조, 세수, 머리 감기 등), 병동의 행정업무 보조, 검체 및 약품 이송, 환자 이송 및 환경정리 등
재활지원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신체활동 보조, 일상생활 보조(일반식 보조, 세수, 머리 감기 등), 환자 이송 등

- 간호법 제정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은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함.
 - ▶ 요양병원 간병급여회는 ‘요양병원 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에 계신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 등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질병예방, 건강증진(건강유지 및 회복, 악화방지 등) 등의 서비스가 장기요양 또는 돌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함.

76)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4.03.

- ▶ 그러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병원,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등에서 간호사등(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이 제공하는 업무는 간호사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등에 관한 간호사등의 적정배치기준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이수진의원안>과 <김선민의원안>과 같이 간호사등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 간호서비스등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이 제공하는 업무’ 정의하고 적용하는 때에만 가능

3. 제22대 국회 간호법 제정과정

(1) 배경

-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공백의 난관에 직면한 정부여당과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진료공백을 메꾸는 PA간호사 시범사업과 함께 정부여당의 주도의 독립된 간호관련 법률 제정 재추진
 -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공백에 대처 방안
 - ▶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 “정부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 진료 지원 간호사,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⁷⁷⁾
 - ▶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 자리를 메꾸기 위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차출⁷⁸⁾ → “공보의·군의관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차출로

77) MBC NEWS “[단독] 의료 사태 8개월, PA간호사 지침 유명무실… ‘응답 100% 안 지켜’”, 2024.10.07.

78) 한겨레, “‘최소인원’ 지역 공보의 빠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2024.06.24.

지역의료 공백과 혼란 초래,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 경험도 없어, 의료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군의료 공백이 현실화” 79)

- ▶ “전문의 중심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논의 본격화” 80), → “정부가 3년 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근로 비중은 축소” 81)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와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

- ▶ 2024년 2월 진료공백을 PA간호사로 메꾸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 ▶ 2024년 2월 28일 돌연 정부의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과 ‘의료개혁’에 대한 환영과 지지 입장 표명⁸²⁾
- ▶ 2024년 3월 8일 대한간호협회,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합니다. 대통령님! 간호법안이 필요합니다.”라는 기자회견 개최

○ 2024년 8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이 예고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관련 법률안의 주요 쟁점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강선우의원안>을 수용하여 2일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

- 2024년 8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임금과 단체협약의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 → 8월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월 29일부터 파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총파업 91.11% 찬성

79) 한국의약통신, “공보의· 군의관 차출로 지역의료 공백· 혼란 초래”, 2024.06.24.

80) 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개혁 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4.05.28.

81) KBS뉴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10조 원… “중증 비중 70%로 확대””, 2024.09.27.

82) KBS뉴스, “간호협회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 환영…정부 ‘의료개혁’ 지지””, 2024.02.28.

- ▶ “2024년 8월 19일~8월 23일까지 이루어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4개 사업장의 총 29,705명 중 24,257명(81.66%)가 참가, 투표결과는 22,101명(91.11%) 이 찬성” 83)

〈표 13〉 2024년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현황⁸⁴⁾

구분	특성	대상 사업장	사업장수
공공	특수목적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동부시립병원	3
	지방의료원	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 순천, 강진, 목포, 경기도(6개), 공주, 서산, 천안, 홍성, 부산, 마산, 인천, 군산, 남원, 진안군, 청주, 충주	26
	재활요양	대전세종충남·넥스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2
	소계		31
민간	사립대병원 (현장교섭)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동성심병원, 고대의료원(3),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이화의료원(2), 조선대병원, 중앙대의료원(2),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의료원(4), 한양대병원(2)	19
	민간 중소병원	(특성교섭) 녹색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광명성애병원, 대전선병원, 부평세림병원, 진주한일병원, 일신기독병원, 원진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11
		(현장교섭)성가롤로병원	1
	소계		31
합계			62

83) 메디포뉴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11% 찬성…최악의 경우 파업 돌입한다”, 2024.08.26.

84) 청년의사, “보건의료노조, 62개 병원에 쟁의조정 신청…결렬 시 29일 총파업”, 2024.08.14.

(2) 2차례 간호관련 법률안 심사, 그러나 계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7월 22일)

- 2024년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강선우의원안>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추경호의원안>이 상정
- 2024년 7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관련 법률안’ 단독 법안심사, → ‘간호관련 법률안’ 단독 법안심사가 이루어진 배경은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간호관련 법률안 심사를 요청하였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결과
- 2024년 7월 22일 간호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심사 → 3시간에 걸친 논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
 - ▶ 심사 조항 : 법 제명, 법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료지원업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 심사 조항 중 주요 쟁점 조항은 법 제명, 간호사 업무 및 진료지원 업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사항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간호법 제정안을 윤석열대통령이 직능 갈등 초래 위험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제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직능갈등 등이 우려되는 조항 삭제가 관철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을 고집할 경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⁸⁵⁾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기자회견(2024년 7월 22일)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대신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 ▶ 정부와 여당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진단, 검사, 투약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의사, 의료기사, 약사와의 갈등 조장
 - ▶ 현행 「의료법」에 학력 상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85) 데일리팜, “복지위, 22일 간호법 원포인트 심사…야 “투약, 삭제 관철””, 2024.07.20.

이미 밝혀졌고, 새롭게 전문대 또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출될 경우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와의 차별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직역 내 갈등 조장

-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련 법률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 ▶ 법 제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추경호의원안> 수용
 - ▶ 진료지원업무는 <추경호의원안> 수정(‘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 ‘진료 및 치료 행위 등’)
 -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을 추가한 <추경호의원안> 수용
- 교육부는 <추경호의원안>에서 신설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은 전문대학 내 무분별한 간호조무과 신설 방지를 위해 삭제 의견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관련 법률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 ▶ 법 제명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간호사법(看護事法) 제안(간호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 간호사 업무는 진료관련하여 하위법령 위임없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추경호의원안>에 동의
 - ▶ 진료지원업무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 ‘진료 및 치료 행위 등’으로 <추경호의원안>의 수정안에 동의
 -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을 추가한 <추경호의원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 법안심사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하여 <추경호의원안>에 동의하였다고 발언⁸⁶⁾함.

86) 출처: 국회 속기록,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7월 22일), 31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8월 22일)

- 국민의힘 주도의 간호관련 법률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
 -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뀌야 할 때” 정책토론회
 - 2024년 8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국민의힘 김미애의원) 주관(대한간호조무사협회) 후원(보건복지부)
 - ▶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 2024년 8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국민의힘 김미애의원) 주관(대한간호협회) 후원(보건복지부)
- 2024년 8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선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김선민의의원안>을 심사
- 2024년 8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 다시 한번 간호관련 법률안 심사 계류
 - ▶ 법 제명(간호법 vs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계속 논란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보건복지부 수정 의견) 제2항을 신설 “간호사등의 인력배치기준 및 업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간호사업무와 진료지원업무 관련한 수정 의견

구분	수정안
서영석 의원	▶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업무가 아니라 간호사의 고유한 면허업무이므로,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라는 조항 삭제⁸⁷⁾ ▶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고유업무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간호사 면허업무로 규정 ▶ 간호사 업무 제1항제2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를 삭제하고,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 및 치료 등 진료지원 업무” 로 규정할 것을 제안

김윤 이수진 이주영 의원	▶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방식으로 접근 ▶ PA간호사를 양성화하려면 전문간호사로 이관된 교육을 받아 PA가 특정 영역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제도와 인력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
보건 복지부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 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정·평가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과정 운영기관과 관련한 지정 및 평가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간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현황 및 절차·요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7) 2024년 8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서 넣었는데 그 하단에 하위법령에 위임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될테니 그것은 면허 범위 내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2024년 8월 22일, 100면.).

- ▶ 간호사조무사 응시자격 : <추경호의원안>의 개정 목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과의 갈등과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확인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의료법」에 존치 : 보건복지부 의견 수용

구분	수정안
보건 복지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료법」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
남인순 김미애 이수진 의원	▶ 남인순김미애의원 : 보건복지부 의견에 동의 ▶ 이수진의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서는 환자단체에서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으니, 간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있지만, 「의료법」 존치에 동의

(3) 간호법 제정에서 공포까지

- 간호관련 법률안에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계속 심사로 계류된 상황에서 2024년 8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파업 91.11% 찬성 결정 →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관련 법률안의 쟁점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 전환
- 2024년 2월 20일부터 6개월 간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공백 사태에서 더해 간호사가 중심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까지 발생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집불통인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
- 간호법과 같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는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운 위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포기하여, 2024년 8월 28일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간호법안, 이틀만에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년 8월 27일 간호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법안심사 : 19시 21분 개최하여 20시 4분에 산회⁸⁸⁾
- 2024년 8월 28일 10시에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간호법안에 대해 의결⁸⁹⁾
- 2024년 8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⁹⁰⁾
- 2024년 8월 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안을 상정하여 표결 처리⁹¹⁾
 - ▶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 중 283명 찬성으로 간호법안 통과
 - ▶ 반대 2표(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의원), 기권(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의의원), 의사 출신인 안철수의원은 불참

○ 간호법 공포,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 2024년 9월 10일,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24년 9월 20일, 간호법안 공포(법률 제20445호)
-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다만, 제14조제2항⁹²⁾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및 평가는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88) 의학신문,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에서 처리”, 2024.08.27.

89) 한겨레, “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2024.08.28.

90) 연합뉴스, “간호법, 법사위 통과...곧 본회의 처리”, 2024.08.28.

91) MBC뉴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283표·반대2표·기권5표”, 2024.08.28.

92)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간호법 체계와 내용에 관한 해석

(1) 간호법에 대한 인식

- 간호법은 문자로 표현되고 일정한 문서의 형식 및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성문법으로, 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원칙과 기준은 “법조문의 문자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자 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문리해석(文理解釋)” 임.
 - 우리나라는 헌법을 정점으로 한 성문법주의 태하고 있어, 문리해석이 법 해석과 적용의 원칙이자 출발
 - 법 해석이나 적용에서 문리해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문의 논리구조의 분석에 의한 논리해석(論理解釋)⁹³⁾을 적용
- 간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
 - (한겨레, 2024.08.28.)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 한다 ... 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 (동아일보, 2024.08.28.) 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합법화 된다 ... 간호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 2024.08.28.) 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 의사의 위임 하에 간호사가 처치와 시술 같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용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⁹⁴⁾

93) 논리해석의 기법으로는 확장해석·축소해석·변경해석·반대해석·유추해석·물론해석 등이 있다. 논리해석의 기법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지향적 판단이 불가능하고 논리해석의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해석의 관점(입법자의 의도, 법령의 목적, 문언의 의미 등 중에서 어떤 측면을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되어지게 된다.(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매뉴얼”, 2009, 35면.)

94) KBS뉴스, “간호법 합의 처리...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2024.08.28.

○ 간호법에 대한 일부 간호계의 인식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장,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각에서 PA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해야 한다.”⁹⁵⁾고 주장
- “간호법이 2024년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 간호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현장의 많은 간호사가 바랐던 건 간호사 인력기준(간호사 1명 당 환자 수)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중요 부분이 빠진 느낌이다.”⁹⁶⁾
- 행동하는 간호사회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 발의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이 부분도 빠졌다. 얻은 것도 없고 오히려 후퇴된 상황”⁹⁷⁾

○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인식

- 보건복지부, “「의료법」 아래의 법체계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⁹⁸⁾으로 인식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당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만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남긴 만큼, 진정성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짐과 약속”⁹⁹⁾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간호법 통과를 두고 많은 의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95) 뉴시스, “PA간호사 합법화 됐는데…“전문간호사로 흡수해야” 주장”, 2024.09.03.

96) 한겨레21, “현장 간호사들, 간호법 통과에 시큰둥한 이유”, 2024.08.28.

97) 청년의사, “간호법에 엇갈리는 시선…“법적 근거 마련” VS “처우 개선 부족“”, 2024.09.07.

98)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 2024.8.27., 28면.

99) 폴리스TV, “김미애, “간호법 통과 즈음한 5분 자유발언…국민의 생명·건강 지키기 위한 첫걸음””, 2024.8.29.

찾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발생한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 이라고 함.¹⁰⁰⁾

(2) 간호법 주요 내용과 체계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의 의미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을 구체적 예시적 방식으로 열거
- 제2조(정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등,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 간병인력(요양보호사 및 간병지원인력) 제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는 사족(蛇足)
⇒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 혜택’에 대한 정의가 필요(간호서비스, 간호서비스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 수정안	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간호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

100) 청년의사, “간호법 복지위도 통과…의료공백 메우기 위한 목적 아냐”, 2024.08.28.

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② 간호사등의 인력배치기준 및 업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삭 제>
--	---

⇒ 다른 법령(권위주의 시대에 제정 또는 개정된 40여 개의 행정입법)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면허·자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만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헌·위법적 논란이 제기됨.

⇒ 정부는 다른 법령의 위헌·위법 논란이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에 관한 법령정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하였으나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됨.

제2장 면허와 자격

○ 제4조(간호사 면허) 제3항 신설 “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간호사 면허) : 제3항 신설은 입법미비 해소,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제2항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의료법	정부 수정안	간호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생략) 1. ~ 6. (생략)	제6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① (생략) 1. ~ 6. (좌동)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u>	제6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① (생략) 1. ~ 6. (좌동) <u><삭제></u>

※ 부대의견 :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대한간호협회, 대한조무사협회, 특성화고, 간호학원연합회 등)

⇒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과정(1,520시간)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양성소, 간호학원에서 이수해야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의에서 당사자인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배제, 그러나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사회적 논의에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연합회가 포함되어 간호조무사 양성제도 개선에 있어 균형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제3장 간호사등의 면허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추경호의원안)	간호법
제11조(간호사의 업무) ① <생 략> - 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좌 동> ~ 4 <좌 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을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u>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u> <u>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u> <u>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제1항제2호 “진료의 보조”와 제2항 “진료지원 업무”는 법률상 명확성이 부재,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진료지원 업무’? 의사 업무 vs 간호사 업무
-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진료지원 업무’를 의사의 업무로 규정
 -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였으므로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 업무로 규정
- ⇒ 민주당 서영석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 최종적으로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규정
-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를 삭제(예외조항 규정 삭제)

- 진료지원업무를 별도의 조문이 아닌 간호법 제12조(간호사 업무) 제2항으로 규정
- ⇒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
- 간호사의 경우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는 반면 전문간호사는 별도의 과정이 없이 진료지원 업무 수행할 수 있음.
 -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해당분야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보건, 정신, 호스피스 분야 전문간호사는 진료지원 관련한 경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 2024년 국정감사 자료 중 진료지원 분야(진료과)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외과,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 응급의학과, 신경과, 성형외과 등 30여 개 분야
- ⇒ 진료지원 업무 :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진료지원 업무는 최소한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허용
 - 간호조무사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음.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 제19조(간호조무사협회)

- 전국적 조직을 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자격정치 저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 의료인 중앙회, 의료기사 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조항 비교

구분	의료인 중앙회	의료기사 중앙회	간호조무사 협회
단체	중앙회 (의무 설립)	중앙회 (의무 설립)	협회 (임의 설립)
회원	회원 당연 가입 중앙회 정관 준수	× (임의가입)	× (임의가입)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 제25조(간호사등의 권리)

-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금지
⇒ 노동자의 권리로서 간호사등이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노동조건 등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정당성을 부여
⇒ 보건의료기관장이나 의사의 지도(지시)로 수행하는 간호사등의 진료지원 또는 진료보조업무는 업무 특성상 수직적 위계나 위력에 의해 위법한 행위를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간호사등의 권리
 - 거부해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
 -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거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소송에서

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 ⇒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필요 →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의료법 개정 시도
 - ⇒ 의료법 제36조제5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의료법의 처벌 규정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실효적 처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
- 2022년 7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현 건강돌봄시민행동)은 환자의 알권리와 2021년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 제화’ 국민동의청원에서 의료법 제36조제5호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사무장 의료기관)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여 실효적 처벌을 도모하고자 한 바 있음.

제6장 간호종합계획 수립 등

○ 제31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실태조사), 제35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제3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등은 매년 간호종합계획에 따른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시도지사 등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 ⇒ 간호정책의 시대 도래
 - 1945년 12월 미군정, 정부행정기구 내 보건후생부에 의무국, 예방의약국, 약무국, 후생국, 위생국, 간호사업국을 두었고, 간호사업국에는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사업과가 있었음.
 - 1962년 의료기관과 의사 중심으로의 의료법 전면 개정 이후, 두드러지게 정부조직에서 간호직제가 축소되다가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됨.
 - 46년이 지난 2021년 정부조직에서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인 간호정책과 신설

제3장 결론

제1절 간호법 제정 의의와 한계

1. 간호법 제정 의의

- 「의료법」 체계에 갇힌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체계(「간호법」)로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¹⁰¹⁾
- 「의료법」 체계에 갇혀 있다는 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의료기관’이라는 낡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나 의료기득권의 체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 그러므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탈피했다는 것은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료인력체계의 재편을 의미
- 「의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료들마저 ‘간호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¹⁰²⁾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중 제1호의 간호과정에 따른 영양상의 간호와 제3호에 따른 교육상담 등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¹⁰³⁾은 국민에게 각종 사회복

101) 김원일, 앞의 논문, (2023), 71면 발췌.

102)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 구성하면서,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의료법 그 어디에도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한다는 내용을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의료업이다.

103)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1항제1호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영양을 위한 간호”, 제1항제3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지시설 및 재가¹⁰⁴⁾에서 독자적인 간호과정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증진(건강 유지와 회복 등), 악화방지 등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대국민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공공정책으로의 간호정책의 시대로의 대전환

- 2023년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특정분야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음. →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건복지법제에서 「간호법」의 간호종합계획과 같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간호에 관하여 정부 정책은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2023년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뿐이었음.
- 그러나 「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시행계획에 반영
 - ▶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등은 매년 간호종합계획에 따른 간호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104)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뿐 아니라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간호사 독자적으로 간호과정을 통한 영양상의 간호와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 시도지사 등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 간호정책의 목표인 ‘우수한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적정배치하여, 모든 국민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간호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수립하여 집행
- 간호대학 입학정원 정책은 간호정책의 부재가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비수도권 간호사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비수도권 간호사 부족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간호교육의 질 저하까지 초래¹⁰⁵⁾
- ▶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만 배정하는 극단적인 정책추진으로 비수도권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82%, 수도권 지역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18%
- ▶ 수도권 지역 활동간호사는 증가 추세인 반면 비수도권 활동간호사는 감소
- 진료관련 간호업무 범위 명확화
 - “법령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법령이 불명확할 경우 수범자가 법령을 준수가 불가능하고, 법 집행자는 객관적 판단지침의 혼란을 초래하여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¹⁰⁶⁾
 - 진료의 보조와 진료지원업무를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환자안전에 기여
 - 그러나 진료관련 간호업무 명확화가 간호법 제정에서 주요한 의의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진료의 보조나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자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의료법」 개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105) 김원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특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145면 발췌.

106)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2), 39면.

2. 간호법의 한계

- 「간호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① 급속한 초고령화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간호와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체계 개선 또는 간호·돌봄인력 및 체계 구축 ②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종합계획 수립·집행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③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인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지역사회)의 간호에 관한 사항 규율
 - 입법취지의 핵심인 간호·돌봄인력이나 간호·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외
 -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에서 간호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 환자나 대상자는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간호·돌봄의 연계는 환자나 대상자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
 - 현행 「의료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장기요양요원으로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로 규정
 - 「간호법」 내에 ‘요양보호사’와 ‘간병지원인력’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 및 자격체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라 환자나 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위한 것
 -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병인력(요양보호사, 간병지원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환자 또는 대상자에게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간호법」 내에 간병인력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추진
 - ▶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또는 요양병원 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 ▶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배치 기준(간호인력+돌봄인력)
 -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급여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확대

- 「간호법」 총칙 제1조(입법목적)에서 규율하고 있는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 관한 사항을 담아내지 못하는 「간호법」의 내용과 체계
 - 법률의 입법취지는 목적 조항을 통해 입법 취지를 명료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주요 내용과 체계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부합하하는 구성되어야 함.
 - 「간호법」의 입법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하는 것
 - 그러나 「간호법」은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서비스 제공 영역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간호법」의 조문 그 어디에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 「간호법」의 내용과 체계가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호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정책수단이 부재를 의미한 것임.
- 「간호법」은 내용 곳곳에 간호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조문이 잔존
 -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와 처우 개선 등’의 조문 곳곳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등이 아닌 간호사와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등에 필요한 지원”
 - ▶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만 한정하여 1인 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 ▶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제2절 간호법의 향후 과제

1. 간호법 관련한 현재적 문제

- 제21대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추진 동력은 간호계와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국회 앞에서 전개한 17개월 간 계속된 아스팔트 투쟁이었던 반면, 제22대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추진 동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공백과 전국보건 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결정적인 영향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간호법」 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한 정책목표 방치되고, 「의료법」 개정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에 매몰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남.
 - 최근 일부 간호계에서 간호사가 다양한 진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을 두고, 진료지원업무를 전문간호영역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 등 제기
-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주요 내용과 조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율배반적 태도
 -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은 입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추진한 간호관련 법률안 관련 논의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의 객관적 사실로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로 주장
 - ▶ 「의료법」 아래의 법체계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 제명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법령의 위계 체계에 대한 몰이해)
 - ▶ 「간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사 면허업무’의 근간을 훼손하는 주장
 -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한 ‘학력차별’,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주장

▶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의사의 업무’로 간주

- 「간호법」에 대한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직능이익단체들의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향후 「간호법」 개정 등에 있어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동할 우려가 있음.

○ 일부 간호계는 「간호법」을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그리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대한 규제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간호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간호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며,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체계는 「간호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담아내야 함.

-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또한 환자 대 간호사 수에 대한 규제와 그에 관한 처벌은 의료기관이 지켜야할 수범자이므로, 「의료법」으로 규정되어야 함.

- 다만, 「간호법」의 간호종합계획에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간호사등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을 입안한 후, 적정 간호사등의 배치기준을 준수할 수범자를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2. 간호법 개선 방안

- 「간호법」의 개선 방향은 「간호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정립하고,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체계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인구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의학적 치료 방식에서 일차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방식으로의 보건복지정책의 전환
- 그러므로 「간호법」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는 치료적 의료행위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넘어 보편적 건강보장, 즉 간호과정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건강 유지 및 관리, 악화방지), 그리고 돌봄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공적 간호·돌봄에 관한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 그리고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간호·돌봄인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우수한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적정배치하여, 모든 국민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있음.
- 「간호법」 개선 과제
-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로 확장하는 공적 간호·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
 - ▶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의 활동지원 등의 돌봄 업무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 등을 통합하는 공적 자격제도 도입하고, 그에 관한 양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
 - ▶ 「간호법」에서는 의료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등에서 간호인력과 연계하여 공적 간호·돌봄(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를 위한 가칭 ‘표준보건간호지침’, ‘표준진료지원지침’ 마련

- ▶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업무 중 제1항제1호의 간호과정에 따른 영양상의 간호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상담 등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에 관한 가칭 ‘표준보건간호지침’을 마련
 - ▶ 간호사의 업무 제1항제2호의 ‘진료의 보조’와 제3항의 ‘진료지원업무’도 하위법령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칭 ‘표준진료지원지침’ 마련하여 명확하게 구체화하여야 함.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한 사회적 논의 방향
- ▶ 간호인력체계는 간호사를 기준으로 볼 때, 위로는 전문간호사, 아래로는 간호조무사가 있으며,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양보호사와 간병지원인력이 존재함.
 - ▶ 2012년 간호인력개편은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2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으로써,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해소에 기여할 여지가 있었으나 현재 매년 3만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는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미흡
 - ▶ 간호인력체계는 배타적 면허관계가 아닌 하나의 체계이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간호대학에 간호조무사 특별전형 신설, 간호학사 특별과정 신설
 - ▶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현황은 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과잉공급인 점을 감안할 때, 간호조무사 훈련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2015년부터 시행된 간호조무사 훈련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 방안
- ▶ 간호사등의 확보가 어려운 간호현장은 노동강도에 높은 3교대 교대근무와 임금 수준이 낮은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영역
 - ▶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재정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립 필요

참고문헌

- 전진영,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80호, (2023).
- 김원일,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 재편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법학박사논문, (2023).
- 김원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특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400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2022).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4).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2).
- 법제처, “법령해석 매뉴얼”, (200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조산법(의안번호 제9127호), 간호법안(의안번호 제9139호, 간호법안(의안번호 제9153호), 검토보고서, (202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7월 22일”, 내용 일부 발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8월 22일”, 내용 일부 발췌.